

복 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163호 2023. 8. 16. (수)

.....

고 시

제2023-93호 도로명주소 고시문

---2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발행 : 부산광역시 복구

편집 : 미래전략실 (☎309-5411)

고 시

○부산광역시복구고시제2023-93호

도로명주소 고시문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,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16일
부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08번길 13 외 1건

▷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종전주소(지번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0건)				

▷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	변경사유
(0건)			

▷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종전주소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
금곡대로208번길 13	2023-08-16	무허가 건축물 멸실
의성로121번길 130		건축물대장 말소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8. 16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